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10 발의연월일: 2022. 11. 11.

발 의 자:허 영·최인호·김윤덕

박상혁 • 허종식 • 강선우

홍기원 · 민홍철 · 이개호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과 주변을 연계·통합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현행법을 제정함.

최근에는 정차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조문이 불명확하여 적용사례가 없는 실정임.

실제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등).

법률 제 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에"를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개발구역의 안의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③ 시·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방법과 고시방법·절차 등에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날까지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 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 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 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조성된"을 "조성되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이전·설치되는 철도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주민 등 의견청취에 과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④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 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지정권자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 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구 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 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 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 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 14. (현행과 같음)

15. 개발구역의 안의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신 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② (생략)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 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의 작성기준 · 방법과 고시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다.

- ②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먼저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날까지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 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신 설>

<신 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 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 른 도시 · 군관리계획이 결정되 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종전에 도시 · 군관리계획으 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 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 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2조의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① (현행과 같음)

-----관할 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 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 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 저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 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 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 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 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 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 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 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 단 신설>

1. • 2. (생략)

② ~ ⑤ (생 략)

제1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지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 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

<u>이 경우 토지</u>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
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
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선수금) ①
<u>조성되는</u> -
,
② (현행과 같음)

(주차장, 운동장, 그 밖에 대통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생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 ②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이전 ·설치되는 철도시설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